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질의·답변 사례

IV. 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 관련

1. 가정용 섬유제품 (1~59)
2. 양탄자 (60)
3. 가죽제품 (61~76)
4. 습기제거제 (77)
5. 화장비누 (78~86)
6. 연질염화비닐호스 (87)
7. 가구 (88~103)
8. 가정용 공구 (104)
9. 면봉 (105~107)
10. 선글라스 (108~113)
11.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14)
12. 침대 매트리스 (115~117)
13. 우산 및 양산 (118~120)

4. 안전·품질표시대상 관련 질의

4-1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초등학생용 실내화가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이 맞는지?

- 안전품질표시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신발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에 해당됨.
(2010.01.07일자 답변)

4-2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방한용 마스크와 손수건이 KC대상인지 ?

- 방한용 마스크와 손수건이 유아용 섬유제품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제품에 신고필증 번호와 KC마크를 표시하여야 함.
- 그런데, 방한용 마스크와 손수건이 유아에 해당되지 않는 연령의 사람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이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정용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자율적으로 안전표시기준을 확인한 후 KC마크를 부착해야함.
(2010.02.03일자 답변)

4-3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소방관들이 입는 근무복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되는지?

- 소방관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입는 단순 근무복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됨. 또한 동제품은 동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섬유제품의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함.
(2010.04.13일자 답변)

4-4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아동용 운동화, 샌들, 슬리퍼 장화 등은 섬유제품인지 가죽제품으로 받는 건지?

- 운동화, 샌들, 장화, 슬리퍼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인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전·품질표시 부속서1)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함.

(2010.04.15일자 답변)

4-5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한복 및 기타제품(머리띠, 아양 등)이 KC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 되는지?

- 한복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안전기준에 표시되어 있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수입통관 되는 제품과 공장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됨.
- 다만 제품이 유아용 섬유제품(‘24개월 미만 유아용 제품)에 해당 된다면 상기법 제19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거쳐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부여받아 KC마크와 함께 표시해야함.
- 기타섬유제품인 머리띠, 아양, 도령모, 복주머니, 땡기 등은 상기의 가정용섬유제품과 유아용섬유제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임.

(2010.04.19일자 답변)

4-6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등산화도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속하는지?

- 등산화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나 그 표면이 가죽제품(60%)인 경우에는 가죽제품으로 분류하여 가죽제품에 해당됨.

(2010.04.19일자 답변)

4-7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야외에서 사용하는 침낭이 안전인증 품목인지?

- 침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섬유제품의 “침구류”에 해당됨.
(2010.05.12일자 답변)

4-8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2010.1월 전에 생산 스카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스카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되며, 동제품의 KC부착은 2010.1.1일부터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국내 제조되어 공장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제품은 KC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음.
(2010.05.18일자 답변)

4-9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스키복과 같은 아웃도어, 텐트 등에 들어가는 의류부자재 seamtape의 kc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의류부자재인 Seamtape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관리되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아 KC마크를 표시할 수는 없으나, 동 부자재를 사용하는 스키복, 텐트 등은 상기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므로 동 Seamtape는 별도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단지 가정용섬유제품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음.
(2010.05.31일자 답변)

4-10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합성고무재질의 크록스(crocs)신발이 안전품질표시/외의류/신발 대상인지?

- 크록스 신발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만 36개월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인 가정용섬유제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동 공산품의 안전요건 분류는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아동용 섬유제품(36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과 외의류(만 12세 이상 성인용)”제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2010.06.07일자 답변)

4-11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방충망 관련하여 국가표준이나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 방충망은 그 소재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음.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섬유제품에서 섬유로 된 모기장을 관리하고 있음.
- 모기장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정용섬유제품의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적합함을 확인하고 KC를 표시해야함.
(2010.06.08일자 답변)

4-12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귀마개 등이 KC해당 공산품인지 ?

- 섬유제품으로 만든 귀마개인 경우 동법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품목에 해당되어 안전·품질표시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라 품질표시를 해야 함.
(2010.08.30일자 답변)

4-13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가정용섬유제품은 안전요건 검사 없이 KC마크 부착을 하면 되는 건지?

- 기타섬유제품(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며, 동제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1) 3.2.7에 “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등은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제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제품은 유해물질의 안전요건 외에 안전·품질표시사항(혼용율,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등)을 적합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하고 KC마크를 표시하시면 됨.
(2010.06.09일자 답변)

4-14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안전품질표시는 꼭 제품에 인쇄되어야 하는지, 태그[꼬리표]방식으로 부착해도 되는지?

- 대상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섬유제품의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함. 동 기준 6.1.2 및 6.1.3에는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스티커, 꼬리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신발에는 섬유의 혼용율,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주의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해당 제품이 만들어진 시점을 추적할 수 있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스타일번호, 바코드번호 등으로 대체가능)는 꼭 표시하여야하고 권장사항으로 제조년월 및 치수를 표시할 수 있음.
(2010.07.23일자 답변)

4-15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침구류(이불, 침대커버등)를 둘이서 소량으로 인터넷에 판매하는 제품의 인증대상 여부?

- 침구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가정용섬유제품)이며, 동제품은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 1) 4.유해물질의 안전요건과 별표1의 안전·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해야하며, 확인하는 방법은 자체 또는 외부시험기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외국의 시험성적서 자료 등을 받아 확인하든 업체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업체 스스로 KC마크를 부착하여 국내 유통할 수 있음.
(2010.08.30일자 답변)

4-16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아동 헤어제품(머리핀, 머리 방울, 헤어밴드 등) 및 아동 지갑, 가방류(목걸이지갑, 소품가방, 크로스백 등)가 인증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 아동 헤어제품(머리핀, 머리 방울, 헤어밴드)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어린이용장신구”에 해당됨.
- 아동지갑 및 가방류(목걸이지갑, 소품가방, 크로스백 등)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에 해당됨.
(2010.09.02일자 답변)

4-17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아동이 사용하는 가방(크로스 또는 배낭)은 KC안전인증 대상인지?

- 아동이 사용하는 가방(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됨.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아동용 섬유제품은 36개월 초과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함.
(2010.11.10일자 답변)

4-18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축구양말(성인, 아동), 야구글러브, 팀 조끼, 골키퍼장갑(성인, 아동), 네오플랜 보호대 등이 ky 자율안전인증 대상인지?

- 양말, 팀조끼, 골키퍼장갑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됨.
- “네오플랜보호대”가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인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서 시중에서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상기의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야구글러브는 상기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 상공산품의 가죽제품으로 관리되는 품목임.

(2010.10.27일자 답변)

4-19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미술앞치마, 미술토시, 부직포 재질의 쇼핑백(아이들 소풍가방 또는 손가방용 도)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품질표시 내용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 섬유제품에 해당하는 “토시 및 앞치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 상공산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의의류)에 해당되므로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업체의 성적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함.(단, 만36개월 이하의 제품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공산품에 해당됨) 또한, 가방은 기타 섬유제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표시사항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KC마크표시, 혼용율, 취급시 주의사항, 제조국명, 제조자 또는 수입자명,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를 표시하고,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2011.03.23일자 답변)

4-20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2010년 5/31일 이전에 출고 통관 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요건 테스트를 받지 않고 출고 통관 되어도 이후(2010.6.1)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개정된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6월1일부터 통관/출고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됨.
(2011.01.11일자 답변)

4-21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양말의 경우 안전품질표시사항에 혼용물의 비율(%)도 표기하여야 되는지?

- 양말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의 가정용 섬유제품 7.1.3 (3)에 따르면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큰 것부터 적어도 2 이상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의 섬유를 기타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양말의 조성섬유 표기 시 혼용률을 표기하지 않아도 됨.
(2010.01.04일자 답변)

4-22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안전품질 표시사항에서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즉, 판매자가 제조사에 완제품으로 매입 받는 경우) 제조자는 표시하여야 하는지?

- 안전품질표시부속서1의 가정용섬유제품6.1.1의 개별제품 및 6.1.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에 따르면 개별제품 또는 꼬리표 등 어느 한 곳에는 제조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2010.01.04일자 답변)

4-23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가죽(통상 천연가죽)과 천(주로 내피로 사용) 하는 경우 가죽제품과 가정용 섬유제품 중 어느 품질표시를 적용하는지?

- 대상 제품이 가죽제품인지 아니면 섬유제품인지에 따라 달라짐. 가죽제품(표면 면적이 60% 이상이 가죽인 경우)인데 안감으로 섬유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에 따르고 아닐 경우는 섬유제품의 안전요건에 따름. 즉 가죽제품이면서 안감으로 섬유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양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10.01.04일자 답변)

4-24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모자는 KC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의류에 포함해야 하는지?

- 모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 ‘가정용 섬유제품’의 “의의류”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안전요건을 확인하고 제품에 KC마크 및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명시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함.
(2010.01.04일자 답변)

4-25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아동 한복은 kc마크부착 대상인지?

- 아동 한복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되어 안전품질표시부속서1(가정용섬유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함.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경우 KC인증마크 없이 품질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10년 1월 1일부터는 KC인증마크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
(2010.01.11일자 답변)

4-26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NR(천연라텍스)약95%+SBR(발포제)약5%의 분석결과를 가지고[100% 천연라텍스]로 표기를 해도 되는지?

- 라텍스베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된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됨.
- 그러나, 충전재는 섬유로 볼 수 없어 한정하여 명칭을 표시하는 규정은 없으나 분석결과인“천연라텍스95%, 발포제5%”또는“100%천연라텍스 발포제품”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2010.02.05일자 답변)

4-27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손수건을 2매, 3매를 1세트로 하여 판매할 경우 KC마크를 어디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

- 손수건의 KC마크 표시는 제품의 꼬리표, 스티커, 포장 등에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됨.
(2010.03.19일자 답변)

4-28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겨울철 방한마스크, 1회용부직포 마스크, 자외선차단마스크, 토시/멀티스포츠 스카프, 방한귀마개, 장갑류, 모자류, 토끼털제품, 스카프 등이 인증대상품목에 해당이 되는지?

- 토시, 스카프, 방한귀마개, 장갑류, 모자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36개월 이하(2010년12월29일까지는 24개월 미만) 유아용의류 및 섬유제품의 경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유아용 섬유제품)’으로 분류하고,
- “아동용 섬유제품(36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과 외의류(만 12세 이상 성인용)”제품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섬유제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또한 동제품은 수입통관 전, 국내공장 출고 전에 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쳐 신고하여야하고, 신고 시 부여되는 필증번호와 KC마크를 함께 제품에 표기해야함.
(2010.02.03일자 답변)

4-29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의 제조원 조건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제조는 ‘생산·조립·가공’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산·조립·가공’하는 자를 제조자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외주생산의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자가
가. 해당제품을 기획설계하고,
나. 사양서, 사양서를 OEM 업체에 제공하고,
다. 원부자재를 직접관리하고,
라.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뢰자를 ‘제조자’로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0.02.09일자 답변)

4-30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E.U 국가에서 의류를 수입 할 경우 품질표시라벨 제조국명 표시 중 E.U로 가능한지?

- 공산품에 대한 제조국 표시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국가를 표시토록 되어 있고, E.U는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없어, 제조국을 E.U로 표시하는 것은 곤란함.
(2010.04.01일자 답변)

4-31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KC 마크 각인된 도장으로 찍어도 되는지?

- 안전인증표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9]에 따라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각인방법도 사용이 가능함. 다만 각인된 KC마크가 유통과정에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됨.
(2010.03.04일자 답변)

4-32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한국Intertek에서 섬유관련 분석업무 및 성적서 발급을 하는데, 통관 시 Intertek의 testreport도 유효한지?

- 인터텍의 시험성적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10.04.28일자답변)

4-33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부직포 원단으로 만든 1회용 방진복, 세균 멸균복, 방역복 제품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는지, 표시사항 제1항~제5항까지의 내용이 한글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지?

- 제품의 용도가 방진복, 세균 멸균복, 방역복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되지 않음
- 그러나, 특수용도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판매하기 전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은 안전품질표시의 기준 제2조제4항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고,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표기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음.
(2010.03.29일자 답변)

4-34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성인 내의류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함유 시 KC안전요건 시험항목 중 알러지 염료가 있는데, 현재 시험기관에 문의 시 권장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 성인 내의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KS K0736에 규정된 알러지 염료사용제한을 규정한 것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
- 따라서 성인 내의류는 업체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원단 공급업체 등에서 사용한 염료를 확인하여 동 염료가 KS K0736에 규정된 염료가 아니면 알러지 염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2010.04.26일자 답변)

4-35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신발, 멜빵, 넥타이에 상품의 개별포장 단위에는 품질표시가 있고, 상품자체에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의 품질표시가 없으면 관련기준위반인지?

- 신발, 멜빵, 넥타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이며, 동제품은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의 기준부속서16.2에 따라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만약 상품포장 또는 제품에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적합한 것임.

(2010.05.20일자 답변)

4-36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개별제품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만 꼬리표, 스티커 등에 제조자명을 표시하면 되는지? 꼬리표, 스티커 등에 제조자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의류의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에 제조자 명 표시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품질표시 기준(부속서1)6.1.2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을 때 스티커 또는 꼬리표 등의 표시할 수 있고, 6.2.1 개별제품의 표시에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자에한함)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어 반드시 제조자 명 표시해야함.

(2010.06.09일자 답변)

4-37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여성 샌들이 KC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지?

- 여성용 샌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의 신발류에 해당되며,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제품안전/생활용품/안전·품질표시기준 클릭)에 따라 표시하면 됨.

(2010.05.25일자 답변)

4-38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박스세트 포장인 제품인 경우 KC마크를 박스 겉면에만 표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품별로 세탁라벨, 또는 행택에도 마크를 기재해야하는지?

- 의류제품은 봉제라벨에 KC마크를 인쇄하여도 가능하나, 동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제품에 스티커, 행택, 프린트 등으로 표시하면 됨.
- 그러나, 그 제품이 박스세트 제품으로서 안전품질표시기준의 박스세트에 안전품질표시가 가능한 제품이며 소비자가 세트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세트에 KC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2010.05.27일자 답변)

4-39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면세점 상품(국내법 적용 안 됨)은 KC 마크가 부착되어야 하는지,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KC 마크 부착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KC마크 부착 의무는 아니며, 또한 KC마크의 부착 주체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제조업자(외국 제조업자 포함)이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
(2010.06.24일자 답변)

4-40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머플러가 한 가지 스타일에 색상이 여러 개일 경우 검사 방법은?

- 머플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며, 동제품은 업체 스스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자체시험, 공인기관의 시험,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단 또는 염색업체의 안전성 결과서 등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KC마크를 표시하면 되고, 또한 시험샘플채취 등은 업체 스스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확인하면 됨.
- 따라서, 3개의 칼라 중에서 1개 선택한 것이 대표성을 갖는 시료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면 됨.
(2010.05.31일자 답변)

4-41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아동, 성인용(36개월 초과) 해외수입상품의 경우, 해외 제조국의 시험전문기관 인증 건 또는 해외 제조업체에서 운영하는 시험실(LAB) 검사결과를 인정하는지?

- KC마크를 표시할 때에 외국의 시험결과도 인정하는 근거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표시에 관한표시를 하도록 하고, 동법 제31조 제3항 제1호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업체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외국의 시험성적서로 업체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도 KC마크표시를 인정하고 있음.
(2010.06.08일자 답변)

4-42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욕실화는 PVE, EVA소재이며 기준항목의 섬유조성 혼용률(겉감, 안감, 충전제)의 기준을 체크할 수 없는 섬유와 무관한 100%플라스틱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 욕실화(PVE, EVA소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가정용 섬유제품의 신발류에 해당됨.
- 따라서, 2010년1월1일 이후 국내 출고되거나, 수입 통관되는 제품부터는 KC마크를 표시해야함.
(2010.06.14일자 답변)

4-43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수입한 타월의 제조국 표시는?

- 타월의 제조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타월을 제조(생산, 가공, 조립)한 자를 제조자로 하고,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제조국이라고 함.
- 또한 제조에 참여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제품에 대한 기능을 부여한 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고, 동제조자가 있는 국가를 제조자로 분류함.
- 따라서, 제작된 원단이 염색, 봉제하기 전에 타월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타월의 기능을 부여한 염색 및 봉제를 한 우리나라가 제조국임.
(2010.06.28일자 답변)

4-44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의류제품의 케어라벨 호칭 표기 시 신장(키)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외 가능한지?

- 의류제품의 치수는 “가정용 섬유제품안전·품질표시기준 6.2.1의 끝부분에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표시할 경우에는 성인남성복의 치수(KS K0050)에 따라 표시 하시면 됨.
(2010.07.15일자 답변)

4-45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수영복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서 해외 임가공 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품질 표시사항 중 제조자명에 수입 업체명을 기재하는 것이 품질표시 위반인지?

- 수영복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제조자명의 표시는 동제품의 제조(생산, 가공, 조립)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 졌다면 동제품을 제조한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체명을 표시해야하며, 동제품의 제조업체명에 수입 업체명을 표시하는 것은 잘못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2010.06.28일자 답변)

4-46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섬유제품(의류)에 박음질로 부착된 꼬리표에 영어로 표기가 되어있는 제품에 품질표시 텍(한글)을 붙여야 하는지?

- 의류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36개월 이하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유아용 섬유)에 해당됨.
- 섬유제품에 박음질 라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파우데이션류, 런닝셔츠, 펜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운동화,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는 꼬리표에 표시할 수 있음.
- 표시문자도 안전품질표시사항은 한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시가 가능함.
(2010.07.12일자 답변)

4-47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여성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전에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여성의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동제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4.유해물질의 안전요건과 별표1의 안전·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확인하는 방법은 자체 또는 외부시험기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외국의 시험성적서 자료, 원단공급업체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성자료 등을 확인하고 업체 스스로 자율적 KC마크를 부착하여 국내 유통할 수 있음.
- KC마크의 부착은 의무사항이나 부착방법은 업체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부착함.
(2010.07.23일자 답변)

4-48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의류의 섬유 성분표시, 세탁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 의무사항인지?

- 의류의 혼용율, 세탁 시 주의사항 등의 안전·품질표시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의무사항임.
(2010.08.06일자 답변)

4-49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사이즈 표기(섬유 등산화, 가죽 등산화, 샌들)시 일반적으로 발길이만 표기하면 되는 건지?

- 치수표기는 가죽제품이 아닌 섬유신발의 경우에는 권장사항이며, 발길이만 표기해도 됨.
- 가죽제품인 경우에는 신발치수는 KS G3116에 의한 KS G3405(구두용 구두골)의 사이즈 표기를 하면 됨.(예: 230C, 230D, 230E 등) 가죽제품중 구두가 아닌 신발의 경우에는 발길이만 표기해도 됨.(230mm, 240mm등)
(2010.07.30일자 답변)

4-50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세탁라벨에만 KC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 가격택이나 꼬리표에도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모두 표시를 해야 되는지?

- 의류제품의 KC마크 부착위치는 해당공산품의 표면에 박음질, 스티커 또는 꼬리표로 부착하여야 하나 해당표면에 붙이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판매단위 포장에 부착할 수 있음.
(2010.09.27일자 답변)

4-51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KC 시험항목 중 PH검사와 관련하여 기준치가 4.0~7.5로 정해졌는지?

- 의류에 대한 PH는 외국에서도 유해성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나라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유아용 섬유제품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 임.
-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 나면은 피부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 피가 중성(PH:7)에 근접해 있어 너무 산성(0~6)쪽이나 알칼리(8~14)쪽으로 치우치면 피부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0.08.27일자 답변)

4-52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작년 수입된 침구 중에 KPS마크로 되어있는 상품이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 가능한지?

- 침구류는 2010. 1. 1일부터 기존에 KPS마크 대신에 KC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나 2010년도에는 제도정착을 위하여 KC마크표시토록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기존에 KPS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마크제품은 판매에 지장을 받지 않은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KC마크를 교체하여야 함.
(2010.09.01일자 답변)

4-53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자전거의류(성인용)를 수입하는 경우 KC마크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성인의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가정용섬유 제품에 해당되며, 동제품은 업체 스스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자체시험, 공인기관의시험,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단 또는 염색업체의 안전성 결과서등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KC마크를 표시하면 되고, 또한 시험샘플채취등은 업체 스스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확인하면 됨.
(2010.09.15일자 답변)

4-54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스카프, 머플러, 우산, 양산이 제품이 제조일자 표기가 권장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 스카프, 머플러, 우산 및 양산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스카프, 머플러)과 우산 및 양산에 해당됨. 스카프와 머플러, 우산 및 양산의 제조연월표기는 필수사항임.
(2010.09.15일자 답변)

4-55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 및 판매된 상품을 2010년 9월 현재 판매시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는지, 2009년 생산 및 유통 되었던 상품을 2009년 말 반품 후 2010년 가격인하 및 행사 제품으로 재 유통시 KC마크 부착여부는?

- 의류상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KC부착은 2010.1.1부터 시행되었음.
- 따라서, 2009년도에 출고되어 판매되는 제품은 KC마크 대상이 아니며, 또한, 2009년도 출고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제품을 2010년도 세일하여 판매하는 제품도 KC마크 대상이 아님.
(2010.09.28일자 답변)

4-56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아동용장갑 및 어린이용 장신구의 제조공장이 아니어도 KC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동용 장갑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 됨. 따라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공산품이 모델별로 지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에 스스로 KC마크와 표시사항을 표시해야함.
-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체시험, 원자재업체가주는 안전성자료, 수출자가 주는 시험성적서, 외부시험기관의성적서등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면 됨.
- 어린이용 장신구는 동법에 다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에 해당됨. 따라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공산품이 모델별로 지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에 신고하고 KC마크와 표시사항을 표시해야함.
(2010.11.12일자 답변)

4-57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의류품질표시(다운의류라벨)(섬유 혼용률: 겉감:나일론100%, 안감:나일론 100%충전재:거위솜털90%거위깃털10%) 상기 표시대로 생산되었고, 표기되었다면 법적제제는?

- 다운의류의 충전재 혼용율표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안전품질표시 기준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7.1.2에 따라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깃털(페더)제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의 라벨에 표기하고, 기타 제품에 오리털 또는 거위털 제품임을 언급할 경우 상기의 구분(오리솜털제품, 거위깃털 제품 등)대로 표시해야함.
- 상기 규정은 2007.1.24일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사항으로 제품의 상기 규정부속서 1(가정용섬유제품)6.1.1에 따라 부착해야함. 만약에 구분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됨.
(2010.09.30일자 답변)

4-58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다운의 경우, 제품표기에 나와 있는 것에서 오차 허용범위가 있는지, 허용범위가 없다면 실제 제품과 표기된 수치간의 차이가 있을 때 법적문제점은?

- 다운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며 동제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7.1.2에 따라 KSK2620(4.조성)에 따라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솜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기토록 규정되어있음.
- 상기의 규정된 내용이 잘못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개선, 수거 파기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기법 제39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010.12.16일자 답변)

4-59 가정용 섬유제품

질의

기존 KPS라벨 용지에 KC스티커만 붙여서 겹침 현상으로 KPS인지 KC인지 구분이가지 않는데 사용가능한지?

- 침구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어 KC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과거 침구류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일 때 사용하던 KPS마크와 함께 두 종류의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KC마크 등으로 KPS마크가 보이지 않게 스티커 처리하는 것이 좋음.

(2011.01.27일자 답변)

4-60 양탄자

질의

카펫 수입시 안전인증검사와 관련하여 수입/통관 후 안전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또한 통관전 검사합격증이 있어야 수입이 되는지?

- 카페트가 일반가정에서 일정한 넓이(1㎡)이상의 바닥깔개용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의 털이나 합성섬유 등으로 만든 섬유제품에 해당된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양탄자에 해당됨.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게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공산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
- 따라서 통관 상에서의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는 없으나, 양탄자를 수입·통관 전에 안전요건을 확인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 판매가능.

(2010.09.06일자 답변)

4-61 가죽제품

질의

유아용 가죽신발 제품에 한해 유아용이지만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넣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지?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제품이라도 가죽원단이 표면면적 비율의 60%이상인 가죽제품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죽제품으로 분류되며, 원단이 표면면적비율의 60%미만인 제품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유아용섬유제품으로 관리됨.
- 가죽제품에 대하여 안전·품질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출고전이나 통관 전에 유해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의 시험·검사기관등을 통해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함.
(2010.05.11일자 답변)

4-62 가죽제품

질의

가죽구두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하나씩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는지 ?

- 가죽구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죽제품에 해당됨. 안전·품질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해당공산품의 출고전이나 통관 전에 유해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의 시험·검사기관등을 통해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KC마크 및 품질표시를 해야 함.
- 따라서, 구두를 인터넷에서 주문받아 한 개씩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KC마크를 표시해야함.
(2011.02.17일자 답변)

4-63 가죽제품

질의

가죽제품에 대한 규정이 36개월 영유아 제품에 까지 적용되는지?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제품이라도 원단이 표면면적 비율의 60%이상인 가죽제품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죽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됨.
(2010.04.27일자 답변)

4-64 가죽제품

질의

실내 바닥에 까는 러그의 재질이 인공피혁(PU) 1장에 친환경UV인쇄 후 특정 형태로 재단한 것인데, 인증 대상인지?

- 폴리우레탄계 러그는 가죽제품(인조가죽)으로 분류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유해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시험·검사기관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KC마크 및 의무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임.
(2011.05.30일자 답변)

4-65 가죽제품

질의

9개월~12세까지 대상의 가죽신발이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이 필요한지,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가죽제품 안전요건 확인인지?

- 유아(36개월 이하)/아동(3~12세)가죽신발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죽제품에 해당됨.
(2010.06.24일자 답변)

4-66 가죽제품

질의

유럽에서 수입될 가죽 및 구두상품이 CE마크가 있거나 그에 관련한 검사 서류가 있을 경우 CE마크 획득 검사 서류를 첨부하여 KC마크 부착이 가능한지?

- 가죽 및 페브리크 구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가죽제품, 가정용섬유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CE마크가 있거나 관련 검사서류가 있는 신발인 경우에 유럽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가 국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품질 표시부속서3(가죽제품) 4.안전요건을 확인하시고 유해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후 스스로 확인하여서 KC마크를 표시해야함.
(2010.07.19일자 답변)

4-67 가죽제품

질의

천연 가죽과 원단으로 된 구두의 KC마크 부착 대상여부는?

- 천연가죽제품과 원단으로 만든 구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 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죽제품(소가죽, 양가죽 등 천연가죽제품)과 가정용 섬유제품(원단)에 해당됨.
(2010.06.23일자 답변)

4-68 가죽제품

질의

암벽화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지, 2010.1.1 이전에 수입된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 암벽화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가죽제품)에 해당됨. 특수용도와 목적을 위해 사용되더라도 원단이 표면가죽면적비율의 60%이상인 제품에 해당된다면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확인하여 KC마크 및 품질표시 해야 하며, 가죽제품은 2010년1월1일 이후 통관되거나 출고된 제품에 한하여 KC마크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해야함.
(2010.07.26일자 답변)

4-69 가죽제품

질의

가죽장갑을 제조, 판매할 시 제조일자를 표기는 권장사항인지?

- 가죽장갑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죽제품에 해당되며, 가죽장갑의 제조연월 표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필수사항임.
(2010.09.16일자 답변)

4-70 가죽제품

질의

인조가죽소재의 파우치(화장품가방, 선글라스 보관함 등)도 KC유해물질 검사 대상인지?

- 가죽소재의 파우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안전·품질 표시대상공산품인 가죽제품에 해당됨.
- 안전품질표시기준에서 가죽제품 이라함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가죽면적비율의 60%이상인 제품으로 가죽 및 모피의류제품(장갑류포함), 벨트류(벨트, 허리띠), 가방류(핸드백류), 지갑류, 신발류 등”을 말함.
- 따라서, 인조가죽소재의 파우치가 표면면적의 60%이상의 가죽인 경우에는 가죽 제품에 해당되어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확인하신 후 KC마크 및 표시사항을 해야 함. (2010.08.19일자 답변)

4-71 가죽제품

질의

가죽소재의 제품이 전체 60%를 초과하는 경우, 자율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가죽제품으로 분리되는데, 가죽제품의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 가죽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되며 안전품질표시부속서3(가죽제품) 3. 용어의 정의에서 가죽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가죽면적비율의 60%이상인 제품을 말함.
 - 가죽제품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 “천연가죽”이라 함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원단(양, 소, 돼지, 악어 등의 피혁을 포함한 동물가죽)을 의미함.
 - “인조가죽”이라 함은 천연피혁 대체품으로 개발된 인조피혁 원단(파이룩신 레더, 비닐레더, 스폰지레더, 나일론도장 합성레더, 폴리아미드계 합성레더, 우레탄계 합성레더, 아미노산계 합성피혁 등 인조가죽의 총칭)을 의미함.
 - “천연모피”라 함은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밍크, 여우, 토끼, 너구리, 친칠라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 모피)을 의미함.
- (2010.04.23일자 답변)

4-72 가죽제품

질의

케어라벨을 종이 택 으로만 부착해도 되는지, 의류의 경우에는 안감 쪽에 부착이 되어있는데 가방 안쪽에도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지?

- 가죽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은 안전품질표시부속서3(가죽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함. 본 규정에 따르면 가죽신발, 가방 및 벨트의 경우에는 일반섬유제품과는 다르게 케어라벨 없이 택 으로만 부착해도 됨.
(2010.01.26일자 답변)

4-73 가죽제품

질의

수입제품의 경우 CE(유럽연합) 마크가 부착된 신발(완제품)을 국내에서도 검사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한, 유럽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도 국내에서 인증이 되는지?

- 가죽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CE마크가 부착된 신발인 경우에 유럽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가 국내에서 인증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품질표시부속서3(가죽제품) 4.안전요건을 확인하고 유해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스스로 확인하여 KC마크를 표시하면 됨.
(2010.05.06일자 답변)

4-74 가죽제품

질의

점퍼류(외의류)의 모피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요건 기준이 300mg/kg이 맞는지?

- 안전·품질표시부속서3(가죽제품) 4.안전요건 주1.에 “가죽제품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장갑, 바지 등)은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75mg/kg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점퍼류(외의류)는 일부 닿는다고 하여도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폼알데하이드의 안전요건은 300mg/kg이하이면 됨.
(2010.05.12일자 답변)

4-75 가죽제품

질의

신발은 소재의 종류뿐만 아니라, 소재의 함량(예:천연소가죽80%+인조가죽20%)까지도 표기해야 하는지?

- 가죽제품 중 신발류의 표시사항은 안전·품질표시부속서3(가죽제품) 7.1.1에 따라 재료의 종류를 갑피,창으로 구분하여 재료의 종류만 표시하면 됨. 또한, 신발 제품에 대한 혼용율은 가죽제품에는 표시하지 않으며, 섬유로 된 신발의 경우에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표시하여야 함.
(2010.06.09일자 답변)

4-76 가죽제품

질의

안전품질표시 항목 중 제조자명에 대해 법인명이 바뀐 시점과 동일하게 표시사항을 바꾸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 가죽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해당되며, 법인명을 변경한 시점으로 이전에 제조되어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법적으로 법인명 변경 이후에 제조되어 출고 또는 통관 할 제품에 대하여는 변경된 법인명(제조자명)을 표시하여야 함. 또한, 변경 전, 후의 법인명 혼용 사용에 대한 유예기간 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2010.09.15일자 답변)

4-77 습기제거제

질의

습기제거제의 경우 KC마크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습기제거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기를 하여야 함.
-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5(습기제거제) 1.적용범위에 의하면 일반 가정의 벽장, 장롱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제습을 위한 흡습제의 성분에 염화칼슘, 산화칼슘, 염화마그네슘 및 실리카겔을 사용한 가정용 습기제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항목 등에 대한 검사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면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5(습기제거제)의 표시에 따라 표시한 후 KC마크를 사용하면 됨.
(2010.04.16일자 답변)

4-78 화장비누

질의

천연 핸드메이드 비누가 인증대상 품목인지?

- 천연비누가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 비누에 해당된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화장비누에 해당됨. 화장비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부속서6(화장비누)의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함.
(2010.11.01일자 답변)

4-79 화장비누

질의

천연비누를 제조 판매하여 대형 on-line 업체에 제품을 납품 시, 시험성적서 및 제품표준서 요청을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작성하는지 아니면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 화장비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중량, 주성분등을 자체적으로 시험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공산품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함.
(2010.05.26일자 답변)

4-80 화장비누

질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면적이 좁거나 판매용이 아닌 경우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항목 중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는지?

- 화장비누가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이어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산품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항목 중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없으며, 날개 또는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함.
(2010.08.02일자 답변)

4-81 화장비누

질의

일반 세안비누에도 유통기한이 있는지?

- 화장비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비누의 유통기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10.09.24일자 답변)

4-82 화장비누

질의

비누의 원료는 어느 기준에 맞추어 시험을 해야 하는지?

- 비누가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 비누에 해당된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화장비누에 해당됨.
- 화장비누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 부속서6(화장비누)의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화장비누의 안전기준에서는 사용한 원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성분에 대한 표시사항을 하면 됨.
(2010.09.29일자 답변)

4-83 화장비누

질의

새로운 비누를 제조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표시기재사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화장비누(고형비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안전·품질표시 부속서6(화장비누) 7.표시의 형식에 따라 최소 판매 단위마다 낱개 또는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형식의 3.주성분에 대해 명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함유된 주요성분 6가지를 모두 적어도 상관없음. 또한 제조수량의 표시는 포장된 제품에 한해 적용됨.
- 안전품질표시부속서6(화장비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제품안전/생활용품/안전품질표시대상/화장비누)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10.04.27일자 답변)

4-84 화장지

질의

중국에서 수입하려는 화장지가 향기나 화장의 기능(파운데이션 등)이 없고, 얼굴안면의 기름을 흡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KC에 포함되는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미용화장지는 천연펄프로 만든 건식 주름 처리를 한 티슈 제품을 말함. 제품이 천연펄프로 만들어졌고 화장용이 아닌 청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되는 품목.
(2010.07.29일자 답변)

4-85 화장지

질의

KC마크 도입 후 2년간 기존마크와 병행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마크를 사용하던 제품은 2년간의 유효기간을 준다는 뜻인지?

- 화장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관리되고 또한 2010년1월1일부터는 동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업체 스스로 KC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는 제도임.
(2010.01.06일자 답변)

4-86 화장지

질의

화장지 안전 품질부속서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하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표기하는데, 식품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료는 원료의 구분상 "재생원료"인지, "100% 천연펄프" 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 재활용 화장지임에도 식품위생법에 만족한 재질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을 표기토록 한 규정을 생략하게 한 이유는 식품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규정에 만족한 제품을 말하며 동 기준에서는 재생원료나 천연펄프에 대한 구분이나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도 상기기준에 적합한 경우 표기를 생략 할 수가 있음.
(2010.07.06일자 답변)

4-87 연질염화비닐호스

질의

세탁기용 연질염화비닐호스를 시험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성적서가 나왔는데, 이후 절차가 기관(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KC마크만 부착하면 되는지?

- 연질염화호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됨. 안전품질표시대상품목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함을 자체시험 또는 제3기관에 의뢰시험을 통하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KC마크와 함께 관련 기준 표시사항대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율안전확인필증번호는 해당사항이 아님.
(2010.03.15일자 답변)

4-88 가구

질의

맞춤가구(싱크대를 포함한 부엌가구)의 KC마크 및 표시사항은?

- 맞춤가구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구로 판단되며, 가구안전기준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음.
(2010.02.04일자 답변)

4-89 가구

질의

밥상, 교자상이 KC마크 인증의 대상인지?

- 목재로 제조한 밥상, 교자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가구에 해당 되므로 KC마크 대상임. 따라서 가구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KC마크를 부착해야함.
(2010.05.13일자 답변)

4-90 가구

질의

성인용 이층침대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침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중 [아동용 이단침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중 [가구]에 해당 될 수 있음.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아동용 이단침대’로 제작 판매하실 경우에는 안전인증 기관에 자율안전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제품에 부착해야함.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구’로 제작 판매하실 경우에는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KC마크를 제품에 표시해야함.
- 다만,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동용 이단침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2010.05.17일자 답변)

4-91 가구

질의

판매자는 KC마크 부착여부 후 판매하였을 경우 KC마크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있다면 차후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지?

- ‘가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함. 가구의 경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234호, 2010.6.23)에 따라 ‘10년 7월 1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후 KC마크를 포함한 ‘안전품질표시’를 제품에 해야 함.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함. 만약 안전품질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제품이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품질표시의 내용이 허위성 등이 판명되는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2010.07.22일자 답변)

4-92 가구

질의

수입 소파베드, 소파를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가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며 소파는 가구의 적용범위에 해당됨.
 - 가. 가구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가구에 대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자 및 수입자가 객관적인 자료(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업계 및 단체의 시험성적서 등)로 해당 제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업체 스스로 KC마크를 포함한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수입하시는 소파의 모델이 달라질 경우는 제품의 재질이나 특성에 따라 시험·검사 여부를 업체가 판단하여 선택해야 함.
 - 다. 제품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됨.
- (2010.12.09일자 답변)

4-93 가구

질의

여행용(캠핑용)으로 수입하는 가구 일체(테이블, 의자 등)는 안전품질 표시 기준의 가구(부속서10)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또 이미 수입한 물건에 대해 물품 최종 박스 표면에 스티커로 부착 표시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 가구 및 텐트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해당되어 KC마크를 포함한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함.
 - 가. 다만, 가구의 경우 일반 가정, 학교,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책상, 의자, 싱크대 등이 해당되며 여행 전용(캠핑용 등)으로 제작되는 테이블, 의자 등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음.
 - 나. 현재 안전품질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제품에 직접 표시를 하기 힘든 경우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최소단위 포장에 안전품질표시를 할 수 있음.
- (2010.11.22일자 답변)

4-94 가구

질의

2층 철제 프레임 침대를 수입, 판매에 필요한 자율 안전 검사 및 기타 인증이 있는지?

- '2층 철제 프레임 침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증빙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품에 안전품질표시(KC마크 포함)를 하여 판매해야 함. 그러나 아동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 KC마크 및 신고필증번호를 부착해야 함.

(2010.08.20일자 답변)

4-95 가구

질의

목재의 가정용 공간 박스의 경우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 분류는?

- 가정용 목재 공간박스 및 책장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구 중 기타 가구류의 '정리함'에 해당됨.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품질표시 및 KC마크를 제품에 표시해야함.

(2010.06.08일자 답변)

4-96 가구

질의

가구의 재질이 합판, 섬유판 등이 아닌 원목일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톨루엔 방출량,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을 하는 대상인지?

- 원목의 경우는 안전요건상의 시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품별로 '재질별, 두께별, 치장별'로 시험항목을 규정한 것은 재질 또는 두께, 치장(도장, 무늬목, PVC 등 제품 표면처리)에 따라 유해물질 방출량에 대해 시험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임.

(2010.04.27일자 답변)

4-97 가구

질의

가구류의 안전품질표시기준 KC 마크 시행일정은?

- KC마크는 가구뿐만 아니라 의류, 안경테 등 30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 201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업체 스스로 확인하고 부착하는 것임.
- 표시사항의 예) [품명, 외형치수, 상판의 표면제,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제조국명,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고 업체 스스로 KC마크를 부착하면 됨.
(2010.05.25일자 답변)

4-98 가구

질의

싱크대의 부품을 재질별(일반합판PT30T, 인조대리석상판12T 등)로 각 항목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 가구(싱크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해야함.
- 가구의 안전품질표시 기준상의 안전요건의 ‘재질별, 두께별, 치장별’로 시험항목을 규정한 것은 재질 또는 두께, 치장(도장, 무늬목, PVC등 제품 표면처리)에 따라 유해물질방출량 시험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임.
(2010.04.12일자 답변)

4-99 가구

질의

소파와 같은 목재 식탁의자(좌판 부분 목재재질에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음) 또는 가죽으로 마감 처리된 침대 같은 경우도 4.1 목재 재질 안전요구사항에 적용되는지?

- 가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됨. 기술표준원 고시 제234호(2010.6.23)에서 규정한 [4.안전요건](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의 허용기준치)은 의자, 소파, 침대 등 가구의 [1.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제품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임.
(2010.09.17일자 답변)

4-100 가구

질의

순수 목재 재질의 안전요구사항은?

- 가구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의 안전요건 중에서 “제품의 표면 가공된 목재재질은 재질, 두께, 표면처리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격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안전요구 사항에 적합”의 내용은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에 도장, 필름, 무늬목 등으로 코팅하였을 때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의미하며, 또한 순수한 목재 재질은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못 등 유해물질이 없는 재료로 가구를 만들었다면 안전요구사항이 불필요하나 가공과정에서 접착제, 표면코팅 등으로 유해성이 함유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 요구사항의 적합여부도 확인해야함.

(2010.05.25일자 답변)

4-101 가구

질의

가구를 아파트현장에 평형대 별로 건설사 요청에 맞게 대량으로 제작하여 (불박이장, 싱크대 등) 시공하는 가구도 KC마크를 붙여야 하는지?

- ‘가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해당됨.
- 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10년 1월 1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서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에 납품되는 가구도 KC마크 표시대상에 해당되며, 가구에 안전품질표시(KC마크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경우 제3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시험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업체가 제품에 KC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2010.08.17일자 답변)

4-102 가구

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험대상을 확인
토록 변경'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컬러별 또는 색상(레드, 화이트, 블랙 등)별로
시험대상을 확인 안 해도 되는지?**

- '10년6월23일에 고시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기준 개정 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234호)에서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의무적으로 규정한 시험대상(재질, 두께, 치장)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험대상을 확인토록 변경하였음. 이는 색상(레드, 기타컬러별), 재질 등이 달라질 경우 시험을 받아야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스스로 객관성 있게 판단하셔야 할 사항임.
(2010.07.22일자 답변)

4-103 가구

질의

목재 가구류에 일부 가죽으로 싸여져 있는 제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 가죽제품 가구류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구'임. 가구의 경우 목재재료에 대해 안전기준치를 규정하는 것 외에 가죽부분은 가죽제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유해물질 안전기준치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합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가구의 안전요구사항(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기준치)을 충족하여야 하며, '가죽제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의 안전요건(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의 기준치를 준수해야함.
(2010.03.26일자 답변)

4-104 가정용 공구

질의

생활용품 가정용공구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품목에 KC마크만 표시하여 판매하면 되는지?

- 가정용공구(플라이어, 펜치, 멍키렌치, 파이프렌치, 니퍼, 스패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임. 또한 가정용공구는 업체 스스로 안전품질표시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KC마크를 부착하는 제품이므로 특정기관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곳은 없으나 업체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외국의 시험성적서등으로 안전성 확인이 되어야함.
- 안전성 확인 후 업체가 우리제품은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업체 스스로 KC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하면 됨.
(2010.08.24일자 답변)

4-105 면봉

질의

면봉을 유효기간 안에 또는 공시 기준일 전에 수입하여 매장 판매 중 새로 공시된 안전기준 미달일 경우(안전기준 전에 수입된 제품)에는?

- ‘면봉’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2009.6.30일자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314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에 의거 KC마크도안은 2010년1월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1. 2009.12.30일자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979호 부칙에 면봉은 2010.2.28일까지 업체 스스로 기존규정과 개정규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장 판매도 가능.
- 2. 2. 28일까지 개정규정에 미달인 제품도 수입가능하나 3.1일부터는 개정규정에 부합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해야 함.
- 안전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벌칙 및 처벌조항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가능.
(2010.01.05일자 답변)

4-106 면봉

질의

면봉과 철수세미가 KC대상품목에서 제외상품인지?

- KPS마크는 2009년 7월 1일부터 KC마크로 변경되었으며, ‘면봉’과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해당. 동 공산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9호) 제3조에 따라 KC마크를 붙이도록 되어 있음.
(2010.01.18일자 답변)

4-107 면봉

질의

면봉을 수입하는데 인증 받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 면봉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면봉은 인증대상품목이 아니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해당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 판매토록 규정되어 있음.
 -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16 면봉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품명, 솜의 성분, 봉의 재질, 수량,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2010.04.02일자 답변)

4-108 선글라스

질의

선글라스 가시광선투과율, 자외선 차단율을 유럽연합 스탠다드 EN1836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 ‘선글라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으로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해당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 판매토록 규정되어 있음.
-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표시기준부속서 3. 선글라스의 표시 내용 중 ‘광선허성 표시사항’에는 ‘자외선차단율’과 ‘가시광선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EN1836 선글라스 제품규격으로 시험 평가한 결과는 사용 가능함. 다만, 선글라스 안전기준의 광선차단율 특성표시를 위한 시험방법으로는 KSP4404(선글라스용 렌즈)가 있음.
(2010.01.07일자 답변)

4-109 선글라스

질의

선글라스 제품(안경테-수입품)에 '제조국명'을 표시하고 표시(인쇄 또는 고리)에 제조국명을 기재 하지 않을 경우 표시위반인지?

- 수입품의 경우 제조국을 몸체에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사항에도 제조국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표시해야할 내용이 빠질 경우 표시위반이 됨.
(2010.02.02일자 답변)

4-110 선글라스

질의

직수입한 선글라스가 전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경우 제품 표기 시 플라스틱으로 표기 가능한지? 자외선 차단율 및 가시광선 투과율을 유럽연합 스탠다드 기준으로 표기 가능한지?

- 테와 렌즈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면 표기가능하며 또한, 유럽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도 표기 가능함.
(2010.02.08일자 답변)

4-111 선글라스

질의

제조년월을 수입업자 등이 실제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수입년월로 대체하여 표기하여도 무방한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는 선글라스 및 안경테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제조년월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제조업자로부터 제품 수입 전에 제조년월을 확인하여 제품에 표기하여야 하며, 수입년월로 대체하여 표기하여서는 안 됨.
(2010.02.16일자 답변)

4-112 선글라스

질의

소아용 선글라스 렌즈의 경우 자외선 차단율 수치로 몇 퍼센트 정도가 합격인지?

- 선글라스 광선차단율은 KSP4404(선글라스용 렌즈)에 따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동 규격에서의 차단율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차단율에 따라 1종, 2종으로 나뉘어 있으나 차단율에 대한 규제치는 없으므로, 차단율을 측정해서 얻은 결과를 표시하면 됨.
(2010.04.22일자 답변)

4-113 선글라스

질의

유럽 안전기준을 통과한 선글라스 제품은 KC표시를 할 수 있는지?

- 선글라스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제조자나 수입자가 해당품목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한 후 표시사항에 따라 표시하도록 되어있음.
- 안전요건 확인방법은 제조/수입업자가 자체시험 또는 제3자 기관 등을 통하여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랐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로부터 확인된 기술문서 등을 통해 관리해도 됨.
- 또한, 유럽 안전기준에 통과된 제품에 대해 KC표시 가능여부는 유럽의 안전기준이 KC안전요건과 적합한 경우 KC표시 가능.
(2010.05.20일자 답변)

4-1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방장애물탐지 보행보조기기를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부착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손에 휴대할 수 있는 형태로써 보행시 장애물의 유무 및 거리정보를 진동으로 알려 주고 필요에 따라 사물의 색깔과 주변 환경의 명암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제품은 인증대상인지?

-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시에 사용하는 지팡이에 전방탐지를 할 수 있는 아이소닉(ISONIC) 기능을 장착하였다면, 보조 장치를 추가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는 공인 시험기관 등에서 안전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음. 공인 시험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80)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50) 2개 기관이 있음.
(2010.01.20일자 답변)

4-115 침대 매트리스

질의

재질은 벨로아 극세사 원단에 내용물은 견면 압축한 소재로 되어있는 안전 양면매트리스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KC마크를 부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침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매트리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별표3]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임. 안전품질표시기준 안전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체시험 또는 제3자의 시험·검사기관등을 통해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 후 KC마크 및 품질표시를 하여야함.
(2010.11.25일자 답변)

4-116 침대 매트리스

질의

2009년 침대매트리스가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지정된 후 현재 제품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인증 받은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 또는 광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 침대매트리스는 2009.6.30일 지식경제부령 제8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 품목조정되었으며, 2010.1.1부터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는 자율안전확인관련 기 획득한 신고필증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314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2010.1.1일부터 KC마크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2010.04.29일자 답변)

4-117 침대 매트리스

질의

라텍스로 만든 매트리스 표시사항에서 모듈 호칭의 약호 및 제작치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 ‘침대매트리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3]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임. 침대매트리스는 일반가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보통침대의 매트리스를 말하며, 라텍스매트리스는 폼매트리스의 한 종류로 표시내용에 모듈호칭의 약호 및 제작치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2010.08.06일자 답변)

4-118 우산 및 양산

질의

유모차의 프레임에 집게방식의 CLAMP를 집어서 고정하고, 고정된 CLAMP에 양산을 결속하는 제품 중, 생산 수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양산부분과 CLAMP가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KC 어느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우산 및 양산에 해당됨. 따라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자체시험 또는 제3자의 시험검사기관등을 통하여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랐는지 확인 후 KC마크 및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함.
(2011.05.12일자 답변)

4-119 우산 및 양산

질의

2010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단속은 등급표시 실행여부의 단속인지, 등급표시를 부정으로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 우산 및 양산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0’에 합격하는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품질표시기준에 합격하지 못하는 제품은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으며, 2010년 6월 1일부터는 등급표시 실행여부 및 불법표시 여부를 단속하게 됨.
(2010.01.28일자 답변)

4-120 우산 및 양산

질의

생산은 OEM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저희가 수입하는데,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우산 및 양산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에 제조는 ‘생산조립가공’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산조립가공’하는 자를 제조자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제조자는 OEM 생산업체가 됨. 수입자는 귀사로 표시가 가능함.
(2010.02.18일자 답변)